

학교법인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한신학원 정관 제129조에 의하여 능률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하며 한국가독교 장로회의 직영 학원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31.>

제1조의2 (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정관 제24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4. 5. 1.>

- ① 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
- ②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학생정원의 증감, 학과·대학·대학원의 신설과 폐지 등)
- ③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인사, 복무, 직제, 급여 등) 단, 정부출연사업 수주로 직제신설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 직제를 신설하고 추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5.>
- ④ 기타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사항으로 이사회의 심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조의3 (설치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5. 26.>

- ① 정관 제24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란 신규채용, 승진, 강임(降任),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②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4호의 “임용” 중 전보(轉補), 겸임, 파견, 휴직, 복직, 의원면직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고등학교는 이사회에서 임용한다. <개정 2024. 12. 19.>

제2장 임원의 선임

제2조 (전무이사의 선임)

이 법인은 법인 및 수익사업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전무이사 1인을 이사회선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 단,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 (명예이사의 선임)

- ① 학교 발전에 공헌한 자 및 공헌할 자로 명예이사를 약간 명 둘 수 있다. 단, 이 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명예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결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③ 명예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제3장 서기 선임 및 역할

제4조 (서기의 선임과 역할)

- ① 서기는 인사교육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로써 선임하고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서기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진행의 절차를 준비한다.
- ③ 이사회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고한다.

제4장 분과위원회

제5조 (분과위원회)

- ① 이사회의 운영을 위하여 인사교육위원회, 재정관리위원회, 건설위원회를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5. 26.>
- ②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장의 요청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5. 26.>

-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상의해 임명한 뒤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2. 5. 26.>

제6조 (분과위원회의 종류)

① 인사교육위원회

1. 삭제 <2020. 9. 24.>
2. 본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학교의 조직, 기구개편, 정원조정, 학과의 신설과 폐지, 학칙개정 등과 총장의 교직원 인사에 관하여 사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2. 5. 26.>
3. 본 위원회는 신학교육에 관한 사항을 연구 조사하여 이사회에 제의한다.
4. 삭제 <2022. 5. 26.>

② 재정관리위원회

1. 삭제 <2020. 9. 24.>
2. 본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법인 및 학교의 재정에 관한 사항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법인 및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사전 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2. 5. 26.>
3. 삭제 <2022. 5. 26.>
4. 본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수익재산의 운영권리와 보수, 임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 처리한다.

③ 건설위원회

1. 삭제 <2020. 9. 24.>
2. 본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하거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법인과 학교의 건축 등 자산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2. 5. 26.>

제7조

이사장과 총장은 모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장 각 분과위원회 회의 및 결의안 처리

제8조

각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5. 26.>

제9조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처에 비치한다.

제10조

이사장은 이사회 또는 각 위원회의 결의된 사항을 관계부서를 통하여 지체없이 시행케 하여야 한다.

제6장 교직원 임용

제11조

- ① 이 법인 및 산하 각급 학교의 교직원 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정관 및 시행세칙에 준해야 한다.
- ② 삭제 <2022. 5. 26.>
- ③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대학 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 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 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7. 31., 2015. 8. 6.>

제7장 수익사업

제12조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은 정관 제30조 내지 제33조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 7. 31.〉

제8장 총회의 인준

제13조 (총장의 인준)

이사회에서 선임된 총장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14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변경은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나 총회 실행위원회, 그리고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총장선출에 관한 정관개정과 정관 제32조의 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인준 후에 시행하고, 이외의 정관개정은 총회나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 7. 31., 2013. 5. 20., 2014. 7. 18., 2021. 3. 29., 2022. 5. 26., 2024. 4. 26.〉

제15조 (재산의 관리)

정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허가를 득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단, 정관 제32조에 명시된 수익용 기본재산에 한해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얻어 관할청에 허가를 받는다. 〈개정 2020. 6. 29.〉

제1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얻어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7. 31.〉

제9장 재심위원회

제17조 (목적)

학교법인 한신학원 정관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심위원회 규칙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26., 2024. 12. 19.>

제18조 (재심위원회의 구성)

- ① 재심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변호사 및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 5년 이상 근속한 교원 2인
 2. 법인이사 3인(단, 법인이사는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직원대표 2인

제19조 (재심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 선출)

- ①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칭함)은 위원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서기를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은 재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또는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재심위원회의 심사)

- ①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시 사실에 대한 조사,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심문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 ④ 재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심사의 범위)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된 사실 이외의 일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22조 (재심 청구인의 진술권)

- ①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시 그 사실을 명기하고 재심의 결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위배되는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23조 (재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24조 (재심위원의 제척)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위원이 될 수 없다.

1. 본 사건 또는 재심청구인과 관계가 있는 자
2. 청구인과 친족 관계가 있는 자

제25조 (재심위원회의 결정)

- 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취소 또는 변경을 처분권자에게 요구한다.

제26조 (재심 심사결정서 작성)

재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재심 사건 당사자의 표기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와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27조 (재심 심사결정서의 송부)

- ① 재심 심사결정서는 그 정보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 심사결정서를 재심청구인에게 송부함에 있어 배달증명의 우편방법을 이용한다.

제28조 (재심 결정의 효력)

제28조의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귀속한다.

제29조 (재심위원 수당 등)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재심위원회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19.>

제10장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산설 2015. 3. 12.〉

제31조 (목적)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정관시행세칙은 정관 제15조 및 제115조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 (기능)

추천위원회는 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방이사와 추천감사(이하 “개방임원”이라 한다) 선임 대상자를 선임한다.

제33조 (구성 및 절차)

-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위원회에 두며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되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학교운영위원회서 추천하는 자 1인
- ② 대학평의위원회 의장은 법인으로부터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제1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 전에 추천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제1항의 해당 기관에 새로운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을 재추천한다.

제34조 (임기)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개방임원 선임이 확정되는 날로 종료한다.

제35조 (위원장 등)

-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추천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

제36조 (회의)

- ① 법인 또는 대학평의위원회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추천위원회는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37조 (개방임원 추천)

- ① 법인의 이사장은 개방 임원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 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대학평의위원회 의장에게 개방 임원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방 이사의 경우 대상 인원의 2배수, 추천 감사의 경우 단수로 선정하여 법인에 추천한다.

-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개방입원 후보자를 별표 1의 양식에 맞추어 추천위원회에 추천하며 2명 이상의 개방이사가 결원시에는 구분하여 추천한다.

제38조 (비밀유지)

추천위원회 위원 및 서기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9조 (준용)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및 법인 정관에 따른다.

제11장 각 학교장 선임 절차

〈산설 2022. 5. 26.〉

제40조 (소관위원회)

- ① 정관 제3조의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선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인사교육위원회에서 정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② 한신대학교는 총장직 인수에 필요한 총장인수위원회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12장 신학대학원장

〈산설 2025. 10. 10.〉

제41조 (신학대학원장의 기본자격과 임용)

신학대학원장은 정관 제37조 10항부터 13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제42조 (신학대학원장의 지위) 〈산설 2025. 12. 8.〉

- ① 신학대학원장은 한신대학교 규정에 따른 모든 회의(교수회의 포함)에 참석한다.
- ② 신학대학원장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학교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장 정관 시행세칙 개정

〈산설 2015. 3. 12.〉

제43조

본 세칙은 이사정수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196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는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는 199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는 199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는 199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는 199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는 200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는 200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는 200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는 200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는 200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로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로 2007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로 200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로 200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로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로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로 201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위원회 규정 등의 폐지) 이 시행세칙에 저촉되는 기존의 개방이사추천 위원회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시행한다.

【별표1】 개방이사(감사) 후보자추천서

한신학원 개방임원 후보자 추천서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	
출석교회	(노회) (교회)
추천사유	○○○ 이사 후임(○○. ○○. ○○ 임기만료)

상기인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시행세칙 제41조에 의한 개방임원(이사, 감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첨부자료 :
- 이력서 1부(사진 부착)
 - 개방임원 후보자 추천 승낙서 1부(별첨양식)
 - 추천하는 위원의 각서 1부(별첨양식)
 - 교육경력증명서(교육경험이사의 경우)

년 월 일

개방이사추천위원 _____ (서명/날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귀중

(별첨 양식)

개방임원 후보자 추천 승낙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본인은 학교법인 한신학원 개방임원(이사, 감사)후보자로 추천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_____ (서명/날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귀중

(별첨 양식)

각 서

다음 사람이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개방임원(이사, 감사) 후보로 추천됨에 있어 사립학교
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합니다.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개방(이사,감사)			
개방(이사,감사)			
개방(이사,감사)			
개방(이사,감사)			

년 월 일

개방이사추천위원 _____ (서명/날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귀중